#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575

발의연월일: 2025. 2. 28.

발 의 자 : 김준혁 • 박수현 • 이수진

강경숙 · 진선미 · 권칠승

윤종오 · 김문수 · 황명선

황운하 · 김동아 의원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7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을 규정하고, 응시자는이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목별로 학습량, 시험 난이도, 표준점수의 차이에 따른 유불리가 있어 특정 과목에 응시자가 편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일선 법학전문대학원은 물론 변호사협회, 교육부, 법무부 모두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임.

제도개선의 방법으로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폐지 또는 Pass/Fail 로의 전환 및 학점이수제의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여 선택과목에 대한 Pass/Fail 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9조).

## 주요내용

- 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변호사시 험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 점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 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강의 개설 및 수강은 2학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정하고 경과규정을 둠(안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법률 제 호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는 「변호사시험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학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2항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의 인정범위, 최소이수 학점, 이수 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적 중인 사람(이 법을 공포한 해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 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수학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해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9조(학점) ① (생 략)    | 제19조(학점) ① (현행과 같음)               |
| <u> &lt;신 설&gt;</u> | ② 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                  |
|                     | 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는                    |
|                     | 「변호사시험법」 제9조제1항                   |
|                     | 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                  |
|                     | 에 관한 과목의 학점이 포함되                  |
|                     | <u> 어야 한다.</u>                    |
| <u>&lt;신 설&gt;</u>  | ③ 제2항의 전문적 법률분야에                  |
|                     | 관한 과목의 학점의 인정범위,                  |
|                     | 최소 이수 학점, 이수 조건에                  |
|                     |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
|                     | <u>한다.</u>                        |
| <u>②·③</u> (생 략)    | <u>④</u> ・ <u>⑤</u> (현행 제2항 및 제3항 |
|                     | 과 같음)                             |